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9,753,688	13,492,611
일반회계	418,083,828	12,542,515
특별회계	31,669,860	950,096
기타특별회계	31,669,860	950,09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60,015	121,8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84,572	23,53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062,055	211,862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17,390	33,52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72,109	20,163
수질개선 특별회계	9,293,300	278,799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7,443,004	223,290
기반시설 특별회계	225,610	6,768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11,805	30,35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80,42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